

IV.

법제처 심사 후의 입법절차



가.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1) 법령안의 제출자

헌법 제89조제3호에 따르면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 국무회의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대한민국헌법」 제88조제2항, 제89조제17호, 「정부조직법」 제12조제3항). 부총리 및 행정각부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정부조직법」 제19조제2항, 제29조제2항), 행정각부와 같이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국무위원이면 해당 국무위원이 관계 국무위원으로서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한다.

의안제출자 표시 사례

의안 소관 기관	상 황	제출자 명의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장관이 제출	국무위원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	교육부장관이 제출	국무위원 ○○○ (교육부장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가 제출	국무총리 ○○○ (국무조정실 소관)

그런데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국무위원이 아닌 처(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나 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인 경우에는 제출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가 문제된다.

가) 국무총리 소속기관의 경우

처(處)는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 소속기관이고,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대한민국헌법」 제88조제3항)으로서 안건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국무총리를 제출자로 하여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²⁶⁾,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개별법(「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제1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설치하고 있으므로 국무총리가 제출자가 된다. 이 경우 제출자 명의 아래에는 그 소관기관을 명시한다.

의안제출자 표시 사례

의안 소관 기관	상 황	제출자 명의
법제처	국무총리 소속기관이므로 국무총리가 제출	국무총리 ○○○ (법제처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총리 소속기관이므로 국무총리가 제출	국무총리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나) 대통령 소속기관 등의 경우

감사원, 국가정보원 등 대통령 소속기관으로서 그 장이 국무위원이 아닌 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인 국무위원을 제출자로 하여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담당기관으로서 국무회의에 제안(「정부조직법」 제37조제1항)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의 경우에는 개별 법률에서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무총리가 제출자가 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경우에는 개별 법률에서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무부장관이 제출자가 된다.²⁷⁾ 이 경우에도 역시 제출자 명의 아래에는 그 소관기관을 명시한다.

26) 과거 금융감독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개별법(「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 2)에서 금융감독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수행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제안관서였으나, 2008. 2. 29. 법 개정 시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다른 국무총리 소속기관과 마찬가지로 국무총리가 제안관서가 된다.

27)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조제4항, 「방송통신위원회법」 제6조제2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의안제출자 표시 사례

의안 소관 기관	상 황	제출자 명의
감사원	국무회의 서무기관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출	국무위원 ○○○ (감사원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별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제출	국무총리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다) 공동 소관 법령

둘 이상 부처의 공동 소관 법령안의 경우에는 해당 국무위원을 모두 제출자로 기재하되, 「정부조직법」 제29조제1항의 순서²⁸⁾에 따르도록 한다. 법령의 소관이 바뀌는 경우에도 이관하는 부처와 이관받는 부처의 공동 제출 법령안이 된다.

의안제출자 표시 사례

의안 소관 기관	상 황	제출자 명의
교육부와 법무부 공동 소관	교육부와 법무부의 공동소관 법령이므로 교육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함께 제출	국무위원 ○○○ (교육부장관) 국무위원 ○○○ (법무부장관)

의안 소관 부서명

교육부 ○○○과	
연 락 처	(044) ○○○ - ○○○○
법무부 ○○○과	
연 락 처	(02) ○○○ - ○○○○

28) 「정부조직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행정각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동 소관 법령안의 경우에도 해당 상정 법령안이 하나의 부처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무위원만 표시한 사례가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법무부와 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의 공동 소관이지만, 법률 제7503호(2005. 5. 26)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확인 사실자료 제공의 절차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내용상 법무부 단독 소관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무부를 단독 제출자로 하였다.

라) 일괄개정법령

일괄개정이란 하나의 큰 정책방향에 따라 여러 개의 법령에 걸쳐 유사한 개정요소가 발생하는 경우에 입법기술상·편의상, 그리고 입법경제성을 고려하여 개별 개정안을 하나의 법령안에 모아서 개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일괄개정의 경우, 개정 대상 법령안의 주관기관이 하나인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주관기관을 기준으로 의안제출자를 정하면 될 것이나, 개정대상 법령안의 주관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의안제출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지금까지 일괄개정사례를 보면, 위원회 정비, 행정정보 공동이용,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민번호 수집 제한 등을 위한 일괄개정안은 해당 업무의 총괄기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출해왔으며, 한시적 규제완화, 규제일몰제 도입, 수험생 편의 제고를 위한 시험공고 시기 조정 등을 위한 일괄개정안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총리가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일괄개정안이 ‘제정’의 형식을 띄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개별 법령을 개정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원칙적으로는 개별 법령안 주관기관에 해당하는 국무위원이 모두 제출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회의 운영의 편의상 종전처럼 해당 개정사항을 총괄하여 관장하는 기관이 대표로 제출하되, 개별 법령안 주관기관을 모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표지의 제출자란에 대표 제출자 명의 아래에 “(○○○부 등 ○개 소관)”이라고 명시하고, 소관기관의 상세한 목록을 의안 맨 마지막 페이지 의안 소관부서명란에 명시한다.

의안제출자 표시 사례

의안 소관 기관	상 황	제출자 명의
행정안전부 등 9개 기관	일괄개정사항의 총괄 담당자인 국무총리가 제출	국무총리 ○○○ (행정안전부 등 9개 소관)

의안 소관 부서명²⁹⁾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실	
연 락 처	(044) 0000 - 0000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연 락 처	(044) 0000 - 0000

마) 기타사항

차관회의나 국무회의에 법안을 제출할 때 국무위원인 각 부의 장관이 공석인 경우에는 서무부처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출하고, 행정안전부 소관 법안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석이면 국무총리가 제출³⁰⁾한다. 또한, 차관회의 의결 후 국무위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 전에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과 협의하여 변경된 국무위원으로 제출자를 정정한다. 최근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안이 해양수산부장관 명의로 차관회의(2025. 12. 11. 제46회 차관회의)에 제출되어 의결되었으나, 국무회의 개최 전 해양수산부장관의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국무회의(2025. 12. 16. 제54회 국무회의) 시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명의로 제출한 사례가 있다. 이 경우에도 국무위원 명의 아래 소관 부처를 명시한다.

의안제출자 표시 사례

차관/국무회의	상 황	제출자 명의
차관회의(2013. 9. 27.)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표를 제출했으나, 대통령이 미수리 ⇒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출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국무회의(2013. 10. 2.)	보건복지부장관 사표 수리(9. 30.) ⇒ 서무부처인 행정안전부장관 (당시 안전행정부장관)이 제출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 소관)

29) 일괄개정법령의 의안 소관 부서에 부(部)와 소속기관인 청(廳)의 소관부서를 별도로 명시하는 경우 부와 청의 소관부서를 연달아 기재하지 않고, 청의 소관부서를 하단에 별도로 기재한다.

30) 2010년 이명박정부 당시 이○○ 행정안전부장관이 경남도지사 후보 출마로 사퇴하면서 당시 행정안전부 법안을 “국무총리 정○○(행정안전부 소관)”으로 하여 제출한 사례와 2014. 3. 21. 안전행정부장관의 공석으로 안전행정부 소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등이 “국무총리 정○○(행정안전부 소관)”으로 하여 제출된 사례 및 2015. 4. 28. 국무총리의 공석으로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인사혁신처 소관)”으로 하여 제출된 사례가 있다.

바) 제안설명

법령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국가정보원 등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국무회의 참석자(구성원 또는 배석자)가 아닌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국무회의 참석자가 해외출장, 공석 등으로 참석할 수 없고 대리참석도 불가능한 경우, 국무총리 소속기관인 처나 위원회의 소관 법령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국무조정실장이 대신하고, 그 외의 법령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대신한다³¹⁾.

2) 안건의 상정

법령안의 제출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그 실무상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소관 법제(심의)관실에서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에 대하여 온-나라시스템으로 처장 결재를 받으면, 법제정책총괄과에서는 해당 법령안을 국무회의 상정안의 형식에 맞게 검토·편집하여 해당 안건을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한다. 이때 법령안의 기본정보 등이 기재된 법안정보카드를 함께 전송한다.

법령안 주관기관에서는 문서관리카드와 의안관리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통상 해당 법령을 담당하는 개별부서에서 문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전송하고, 법무 담당부서에서는 전송받은 법안정보카드와 문서관리카드가 포함된 의안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에서는 등록된 의안관리카드를 차관회의에 상정한다.

법령안건은 원칙적으로 상정하려는 차관회의 개최일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 의정 담당관실에 제출해야 한다(「국무회의 규정」 제3조제4항). 다만, 법률공포안은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31) 과거 국가보훈처 소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당시 처장·차장이 모두 해외출장, 행사참석 등으로 국무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무조정실장이 대신 제안설명한 사례가 있다.(2013. 6. 25. 제28회 국무회의)

통상 차관회의가 매주 목요일에 개최되므로, 화요일(보통 15시 30분)까지는 안건을 제출해야 한다.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의 의안공유방에 그 전주(前週) 수요일(보통 12시)까지 안건을 게시하고, 화요일(보통 15시 30분)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³²⁾ 그 이후에 제출되는 것은 차관회의의 즉석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차관회의에 참석하는 다른 부처가 안건을 검토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즉석안건의 상정은 국무조정실과의 협의를 거쳐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적으로 허용되므로, 차관회의에 즉석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을 기대하고 입법을 추진하거나 법제처 결재를 추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상정안건의 첨부문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차관회의 또는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때 법령안 주관기관은 의안관리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의안관리카드에는 추진배경, 주요내용 등의 의안취지를 간단히 기재하고, 안건요약서, 추진경과 첨부문서(부처협의 결과, 입법예고 결과, 규제심사 결과,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등), 법령안 원안(법제처 심사안)을 첨부³³⁾ 해야 하며,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을 입안할 때에는 해당 법령안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재정소요비용에 관한 추계서(推計書)를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해야 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제3항).

안건요약서는 해당 법령안의 추진경과,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다. 법령안에도 제안이유 부분이 있지만 차관회의 또는 국무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작성한다.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는 법령안의 조문마다 제정 또는 개정하는 이유를 기재함으로써 법령해석이나 법령심사 그리고 쟁송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32) 안건 상정 또는 의안공유 마감시한은 차관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변동될 수 있으므로 안건 상정 전에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33) 자세한 작성방법은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공유자료실/메뉴얼 및 FAQ /국무·차관회의 일반사용자 메뉴얼 (080401) 참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는 제정 또는 개정하는 모든 조문에 대해 작성해야 한다. 다만, 몇 개 조문이 같은 취지에서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문을 묶어서 작성할 수 있다.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는 법령안 주관기관이 작성하여 법령안의 법제처 심사의뢰 시 제출해야 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7호). 만일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도 그에 맞게 변경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령안 주관기관은 당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중 법제처 심사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법제(심의)관실로 보내고, 해당 법제(심의)관실에서는 심사변경사항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 정부입법시스템의 “입안·심사>나의 할일”메뉴에서 해당 법령안의 상정안건 정보에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를 등록해야 한다. 이후 법제처(법제정책총괄과)가 법령정보카드에 법령 원안과 같이 첨부하여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하며, 법령안 주관기관은 법제처가 등록한 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를 의안관리카드에 첨부하여 의안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심사경과 첨부문서는 대부분 법령안 주관기관에서 직접 작성하여 첨부하지만, 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는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변경된 부분이 반영되었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안정보카드에 첨부한 문서를 의안관리카드에 첨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가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을 해당 법률안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국회법」 제79조제4항)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법률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때에는 추후 국회 제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법률안 국회 제출 시 비용추계서 첨부에 관하여 국회(의안과)와 협의된 실무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를 참고하여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면 된다. 간단히 요약하면, 해당 법령안이 비용 발생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①비용추계서 첨부, ②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또는 ③기발생 비용 관련 참고사항 추가 중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관련 근거

- 「국회법」 제79조의2*에 따라 국회제출 법률안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 비용추계서 첨부

* 「국회법」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 ④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다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비용이 소액인 경우 등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국회의원·위원회 또는 정부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거나 위원회에서 수정된 의안이 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상세 첨부기준

- (첨부대상) “지원”, “지급”, “보조” 등의 용어가 포함되어 있어 재정수반을 명시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내용상 개정안을 집행하기 위해 재정수반이 예상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판단

* 주요 누락 사례

연번	조문	재정수반 요인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항공의 보안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안 사람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국토해양부장관은 <u>항공보안 자율신고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u> 	항공보안 자율신고 제도 위탁·운영에 따른 재정지출 수반 예상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학물질의 등록 및 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u>화학물질평가위원회를 둔다</u> 	화학물질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재정지출 수반 예상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u>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한다</u> 	재건축부담금 면제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수입 감소 예상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u>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활용,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제공, 국내외 건설기술인력의 정보 제공, 건설기술자에 대한 전문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u> 	성과 활용, 자료 및 정보제공, 교육 등을 위한 재정지출 수반 예상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강우(降雨)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늘어난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못할 경우 하수를 신속히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u>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u> 	향후 지자체에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 설치에 따른 재정지출 수반 예상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수질검사 및 수량 분석에 관한 기록을 <u>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u> 	전산망 설치·운영에 따른 재정지출 수반 예상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한 자에게 <u>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의료급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한 의료급여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u> 	포상금 및 장려금 지급을 위한 재정지출 수반 예상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u>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분쟁 조정 및 법률 상담을 위한 재정지출 수반 예상

연번	조문	재정수반 요인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납부 기한 만료일까지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부과일부터 납부일까지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납부 의무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납부를 연기한 기간 또는 분할 납부로 납부가 유예된 기간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 삭제 	환급제도 도입에 따른 세출 증가 및 가산금 징수 제도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 예상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군무원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研修)를 목적으로 파견된 경우에는 해당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결원 보충을 위한 재정지출 수반 예상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4조의2(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②(유효기간) 제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삭제 	현금지원 규정의 일몰기한 삭제에 따른 재정지출 수반 예상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해양부장관은 무역항의 해상구역등과 그와 연결되어 있는 수역에서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할 수 있다. 	선박교통관제 시행을 위한 재정지출 수반 예상

○ (제외대상) 위 실질적 기준에 따라 비용이 수반된다고 보는 경우에도 기존에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하 “기발생 비용”이라 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는 비용추계서 작성대상에서 제외

(예시) ① 개별 법률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 등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제·개정하는 경우

② 예산 또는 기금으로 이미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법률로 명문화하는 경우

③ 하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진행하던 사업을 법률로 상향입법하는 경우

- 종전에는 위 예시의 경우를 비용추계의 대상으로 보았으나, “비용”이란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을 의미(「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회의 요청(2012. 5.)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 다만, 기발생 비용 여부를 해당 법률안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추가적인 조치 필요

〈법률안으로 기발생 비용 여부 확인 가능(A)〉

- 위 예시 ①과 같이 해당 법률안(부칙 경과조치, 다른 법률의 개정 등)만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구체적 사례는 아래 참조)
⇒ 별도 조치 불필요

〈법률안으로 기발생 비용 여부 확인 불가능(B)〉

- 위 예시 ②, ③과 같이 해당 법률안만으로는 기발생 비용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법안 참고사항란에 다음과 같이 기발생 비용임을 명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조○항 및 제○조○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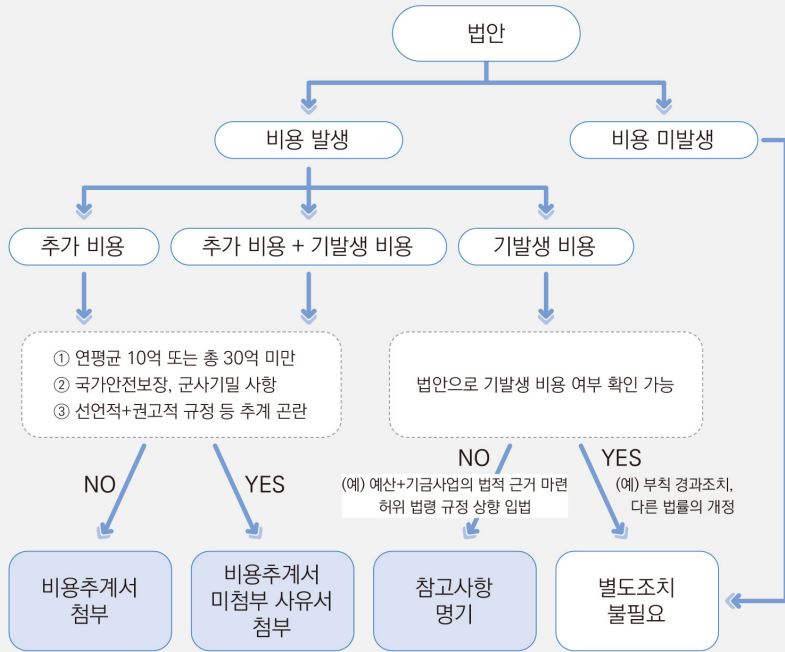
- (첨부대상과 제외대상 혼재) 하나의 법률안에 비용추계 대상과 제외대상(B만 해당)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참고사항은 별도로 명기하지 않고, 첨부하는 비용추계서(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참고사항으로 적시할 내용까지 포함해서 작성

3.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 작성 시 자주 틀리는 형식적 사항

- 재원조달계획서 누락
- 비용수반요인 작성 시 개정안 조문번호 오기
- 추계기간(시행일 ~ 5년*)

*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4. 업무처리절차 요약



법률안으로 기발생비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사례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

- 기존의 「측량법」, 「지적법」, 「수로업무법」을 통합

제 정 안
<p>제28조(지적위원회) ① 제29조에 따른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適否審査)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p>
<p>제58조(대한지적공사의 설립) ① 지적측량과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지적정보체계의 구축 등을 하기 위하여 대한지적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p>
부 칙
<p>제7조(지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지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는 각각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로 본다.</p>
<p>제12조(대한지적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지적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는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로 본다.</p>

[사례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이 법안으로 변경

제 정 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3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제13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제14조(예산) 지급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36조에 따른 방송발전기금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부 칙

제2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근거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②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18조부터 제29조까지)을 삭제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② 심의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을 상임으로 한다.

제26조(사무처)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제28조(예산)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국고에서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사례 3]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법에 따른 정보사회진흥원과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문화진흥원을 한국정보화 진흥원으로 통합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①정부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정보화촉진등을 지원하고 정보화관련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하 “정보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p> <p>②정보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p> <p>③정보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2.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 관리 및 운영의 지원 3. 공공기관 주요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공동활용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정보통신 표준화의 지원 4. 공공기관의 정보자원 관리의 지원 5.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 지원 6. 정보통신 신기술 활용촉진 및 이에 수반하는 전문기술의 지원 7. 정보화 관련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향 분석 및 법·제도연구 8. 공공기관의 정보화촉진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p>④공공기관은 정보진흥원의 설립·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정보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으며, 정부는 정보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p> <p>⑤정보진흥원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공기관에게 그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p>제10조(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설립 등) ①정부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정보화촉진과 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건강한 정보문화 조성 및 정보격차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정보화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p> <p>② 정보화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p> <p>③ 정보화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2.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 관리 및 운영의 지원 3. 공공기관이 보유한 주요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공동이용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표준화의 지원 4. 공공기관의 정보자원 관리 지원 5.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 추진 및 평가 지원 6. 공공기관의 정보통신 신기술 활용촉진과 이에 따른 전문기술의 지원 7. 정보문화의 창달 및 인터넷 중독의 실태 조사·예방·해소 지원 8.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지원 9. 건강한 정보문화 확립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교육 및 홍보 10.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11. 정보화촉진, 정보문화 및 정보격차와 관련된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향 분석, 미래예측 및 법·제도의 조사·연구

⑥ 정보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정보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정보진흥원의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화촉진 등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6조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설립) ① 정부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제7조 내지 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업 지원
2. 국가간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국제협력사업 지원
3.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조사연구 및 출판·홍보 지원
4.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지원
5.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 및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예방·해소 지원
6. 그 밖에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2. 정보화촉진, 정보문화 및 정보격차와 관련된 국제협력 및 홍보

13.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한 사업

1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④ 공공기관은 정보화진흥원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화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으며, 정부는 정보화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⑤ 정보화진흥원은 지원을 받으려는 공공기관에게 그 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정보화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정보화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화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③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4) 차관회의

차관회의는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회의에 앞서 매주 목요일에 정례회의가 열리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가 개최된다.

차관회의는 국무조정실장이 의장이 되고, 각 부·처의 차관³⁴⁾이 구성원이 된다. 법제처 차장은 조약안 및 법령안이 상정되는 차관회의에 배석한다. 그 밖에 상시적인 배석자는 다음과 같다.

차관회의 배석자('25.12.기준)

- 차관급 배석자(7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서울특별시 행정제1부시장
- 고위공무원 배석자(7명): 감사원 제1사무차장, 인사혁신처 차장, 법제처 차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국가데이터 차장, 지식재산처 차장,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

담당 법제(심의)관은 상정안건에 대하여 사정변경이 있거나 다른 부처에서 이견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확인하여 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차관회의가 끝나면 법제정책총괄과에서는 지체 없이 안건마다 그 처리결과(원안 의결·수정의결·조건부의결·보류 등)를 확인하여 담당 법제(심의)관실에 통보(붙임 제6호서식)한다.

5) 국무회의

국무회의는 원칙적으로 매주 화요일 정례회의가 열리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가 개최된다.

34) 차관의 통솔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업무의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5. 7. 22.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재정경제부 등 4개 부처에 차관 2명을 두는 복수차관제가 도입되었고, 2025. 10. 1.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현재 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에는 2명의 차관을 두고 있다. 이들 부처의 경우에는 2명의 차관 중 1명이 차관회의에 참석한다(「차관회의 규정」 제2조).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가 부의장이 되며, 각 국무위원(각 부·처 장관)이 구성원이 된다. 국무회의의 구성원 외의 상시적인 배석자는 다음과 같다.

국무회의의 배석자(*25.12.31.기준)

-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서울특별시장(「정부조직법」 제13조제1항, 「국무회의 규정」 제8조 제1항 본문)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교육 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국가 데이터처장, 지식재산처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감사원 사무총장,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및 국무총리 비서실장

차관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다음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담당 법제(심의)관은 차관회의 수정사항이나 그 밖에 쟁점이 예상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전에 처장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미리 보고해야 한다.

국무회의가 끝나면 법제정책총괄과에서는 지체 없이 국무회의 의결 여부와 그 내용을 확인하여 담당 법제(심의)관실에 통보(붙임 제7호서식)한다.

6) 차관회의·국무회의의 수정안 및 수정사항 처리방법

가) 차관회의 최종상정안

처장의 결재를 마친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에 대하여 차관회의의 안건 접수 전에 부처 이견 등으로 심사안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재받은 심사안(원안)을 수정한 “최종상정안”을 차관회의의 안건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종상정안”과 “원안수정 내용”(붙임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정부입법시스템에 등록하고 온-나라시스템 연계를 통해 결재를 진행해야 한다. 차관회의에는 원안(당초 결재안)을 수정한 “최종상정안”만을 상정하므로, 차관회의에서 최종상정안대로 의결되면 “원안 의결”로 처리한다.

나) 수정원안(차관회의, 국무회의)

처장의 결재를 마친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에 대하여 차관회의의 안건 접수 후에 부처 이견 등으로 차관회의 개최 전에 심사안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재받은 심사안(원안)을 수정한 “수정원안”을 차관회의의 안건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원안”과 “수정내역”(붙임 제9호 서식)을 작성하여 정부입법시스템에 등록하고 온-나라시스템을 통해 별도로 결재를 진행³⁵⁾해야 한다. 차관회의에는 원안(당초 결재안)을 수정한 “수정원안”만을 상정하므로, 차관회의에서 수정원안대로 의결되면 “원안 의결”로 처리한다.

한편 통상의 경우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법령안의 경우 차관회의를 거쳐 상정되므로 수정원안이 발생할 수 없지만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의 즉석안건으로 상정되는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안건 접수 후 국무회의 개최 전에 심사안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재받은 심사안(원안)을 수정한 “수정원안”을 국무회의의 안건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다) 수정안(국무회의)

국무회의에 상정된 법령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국무회의에 제출된 안건의 내용을 회의 개최 전에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소관 부처와 담당 법제(심의)관실에서 “수정내용 및 수정이유를 기재한 붙임 제10호서식의 수정안”을 작성하여 정부입법시스템에 등록하고 온-나라시스템을 통해 처장 결재를 받은 후에 법제정책총괄과를 통하여 국무회의에 제출하도록 한다. 이와 동시에 담당 법제(심의)관실은 “당초 국무회의에 상정된 법령안에 수정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을 이메일을 통해 별도로 법제정책총괄과에 제출해야 한다.³⁶⁾ 국무회의에서 수정안대로 의결된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수정사항을 작성할 필요는 없다.

35) 차관회의의 안건 접수 후에는 정부입법시스템과 온-나라시스템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수정원안과 수정내역의 정부입법시스템 등록과 온-나라시스템 결재를 별개로 진행해야 한다. 수정안이나 수정사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6) 국무회의는 “당초 국무회의에 상정된 법령안”과 “수정내용 및 수정이유를 기재한 붙임 제10호서식의 수정안”만 상정되어 의결되며,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되면 법제정책총괄과는 담당 법제(심의)관실로부터 이메일로 제출받은 “당초 국무회의에 상정된 법령안에 수정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으로 대통령 재가문서를 작성하게 된다.

둘째, 국무회의에서 법령안이 보류되어 추후 수정안을 작성하여 재상정해야 하는 경우이다. 처리방법은 첫 번째의 경우와 같다.

셋째, 차관회의에서 관련 부처 간 합의를 전제로 조건부원안의결된 경우에는 국무회의 수정안을 작성한다.

라) 수정사항(차관회의, 국무회의)

차관회의나 국무회의에 상정된 법령안이 수정의결된 경우에는 차관회의 또는 국무회의 수정사항(붙임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정부입법시스템에 등록하고 온-나라시스템을 통해 처장 결재를 받은 후 법제정책총괄과에 제출한다. 이와 동시에 담당 법제(심의)관실은 “당초 차관회의나 국무회의에 상정된 법령안에 수정사항을 반영한 수정안”을 이메일을 통해 별도로 법제정책총괄과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무회의에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대로 의결된 경우에는 수정사항을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다.

국무·차관회의 의결형식

구분	차관회의	국무회의	비 고
①	원안의결	원안의결	·차관회의: 원안대로 의결 ·국무회의: 원안대로 의결
②	원안의결	수정의결	·차관회의: 원안대로 의결 ·국무회의: 원안을 수정하여 의결
③	수정의결	수정의결	·차관회의: 원안을 수정하여 의결 ·국무회의: 원안을 수정하여 의결 1) 차관회의 결과대로 의결 2) 차관회의 결과를 수정하여 의결
④	수정의결	원안의결	·차관회의: 원안을 수정하여 의결 ·국무회의: 원안대로 의결(차관회의 결과를 폐기하고, 차관회의 상정 원안대로 의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차관회의 또는 국무회의에서 원안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법제처 심사를 마친 결재안³⁷⁾을 말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관회의 수정사항대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경우의 의결형식은 원안의결이 아닌 수정의결이 된다³⁸⁾.

7) 차관회의·국무회의 상정 철회된 안건의 처리

차관회의·국무회의에 상정된 당초 원안이 대폭 수정되는 등 주요내용의 본질적인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실상 수정안으로 처리하기가 곤란³⁹⁾하므로, 상정이 철회⁴⁰⁾되는 즉시 법령안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법제처에 심사의뢰 되었던 종전의 법령안을 철회하도록 하고,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법령심사를 의뢰하도록 한다.

실무사례

차관·국무회의 상정안 철회 방법

철회하려는 원안이 차관회의에 의안으로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제정책총괄과에서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원안을 삭제하면 되나, 차관회의 또는 국무회의 의안으로 접수된 경우에는 소관부처에서 행정안전부에 공문으로 안건철회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소관 법제(심의)관실도 소관부처로부터 심사철회 요청을 받아 해당 법령심사안을 철회로 처리해야 한다. (법령심사안 철회의 세부적인 방법은 p.35 및 36 참조)

나. 대통령 재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률안·대통령령안과 법률공포안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처리하게 된다.

1) 재가문서의 작성

재가문서는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서 기안하는데, 문서의 제목은 법률안의 경우 “----법률안 제출”로, 법률 공포안 및 대통령령 공포안의 경우 “---법률(시행령) 공포”로 작성하고, 국무회의 일자 및 회차를 기재한 후 내부결재자 및 부서권자 등을 지정하여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공포문 또는 법률안 국회제출문 등의 양식은 각각 붙임 제12호서식부터 붙임 제14호 서식까지와 같다.

37) 다만, 최종상정안 또는 수정원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안으로 본다.

38) 왜냐하면, 차관회의에 처음 상정한 안이 원안이 되기 때문이다.

39) 이러한 경우 종전에는 대체안의 형식으로 국무회의에 재상정하기도 하였으나 앞으로는 활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40)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소방방재청 소관)이 차관회의(2005. 7. 7.)에서 다수 이견의 발생으로 보류되어 원안 내용의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소관 부처가 차관회의 상정을 철회한 사례(2005. 7. 21.)가 있다.

2)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副署)

가) 부서권자

국무총리는 법령문서(법률 및 대통령령에 한정함)에 부서하며, 법령안을 제출한 국무위원은 관계 국무위원으로서 부서한다.

부서 관련 헌법 규정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나) 부서 방법

부서는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서 전자서명으로 한다. 공동소관 법령 및 소관을 변경하는 경우 등 관계 국무위원 여럿이 이어서 공동으로 부서하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상의 순서에 따라 부서하도록 한다.

☞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부처 간 업무 조정, 승격, 소속청의 신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외에 관련 사항의 변동이 있는 부처의 장관이 관계 국무위원으로서 부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부서 절차의 진행

법제정책총괄과에서는 재가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국무회의 직후에 국무위원의 부서를 받을 수 있도록 재가문서를 미리 준비하여 국무회의 개최 전날까지 온-나라 국정관리 시스템에 등록한다.

국무총리 또는 관계 국무위원이 국외출장 등으로 국무회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재가를 진행하고 추후에 부서를 보완한다(후결). 다만, 후결도 법률안의 경우 국회 제출 전까지, 대통령령안의 경우 공포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후결 사유 작성 예

- ○○○장관이 ----- 활동 차 국외출장(2026. . . - . . , ○○국 및 ○○국) 중이므로 부서는 추후에 보완하겠습니다.

라) 특수한 경우의 부서권자

(1) 모든 국무위원이 부서하는 경우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안 및 계엄령 선포안의 경우에는 모든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2) 국무회의 후 부서권자가 바뀌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회제출법률안의 경우 이미 부서한 경우에는 그대로 시행하고, 부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회 제출 시의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출장 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국무회의 후 부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포 전에 경질된 경우에는 새로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특이 부서 사례

1. 국무총리 서리의 자격으로 부서를 한 사례

- 정식으로 국회의 동의(2002. 10. 5.)를 받기 전에 김석수 국무총리서리가 선박투자 회사법 시행령 등 다수의 법령 재가문서에 “국무총리서리”의 자격으로 부서를 하였음.

2. 부총리가 국무총리 직무대행의 자격으로 부서를 한 사례

- 1984. 11. 1. 당시 진의중 국무총리가 신병으로 입원함에 따라 당시 경제기획원장관이었던 신병현 부총리가 국무총리의 직무대행(직무대행 부총리 신병현)의 자격으로 부동산등기법 중개정법률안, 지방세법중개정법률공포안 등에 부서를 하여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거나 공포 하였음.
- 2004. 5. 25.부터 6. 29.까지 고건 총리가 사임한 후 서리제도를 운영하지 아니하고,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이던 이현재 부총리가 국무총리의 직무대행(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현재)의 자격으로, 도로교통법시행령중개정령 등 대통령령 77건, 의장법중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43건의 대통령재가문서에 부서를 하여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거나 법령을 공포하였음.

- * 법제처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등 총리령 3건에 대하여 당시 재정경제부장관이던 이현재 부총리가 국무총리의 직무대행(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이현재)의 자격으로 결재를 하여 공포하였음.

3. 국무총리의 부서 없이 재가를 받아 공포한 사례

- 국회에서 2002. 8. 28. 장대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고, 당일 장대환 국무총리서리가 사임한 후 그 후임으로 김석수 국무총리서리가 임명(2002. 9. 10.)되기 전까지 국무총리가 공석이었는데, 이 때 자연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 공포안, 같은 법 시행령 공포안,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공포안 등 3건의 법령 공포안에 대하여 국무총리 부서 없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하였음.

4.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재의요구안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서한 사례

- 2008. 1. 28. 제271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을 2008. 2. 12.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재의요구하기로 결정, 국무회의 직후 당시 김신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의원면직으로 소관 국무위원이 없어 국회와 협의를 통해 박명재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서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음.

5.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서한 사례

- 양식산업발전법안에 대해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석이어서 2014. 12. 30.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서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음.

6. 부서 후 국무총리가 교체되어 공포문서와 관보의 부서자 명의를 다른 사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안 등에 대해 한승수 국무총리가 2009. 9. 28. 부서하고 같은 날 대통령 재가를 받아 재가절차를 완료하였으나, 다음날인 9. 29. 정운찬 국무총리가 취임함에 따라 2009. 10. 7.자 관보에는 정운찬 국무총리를 부서자로 기재하여 공포하였음.

* 그러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회제출법률안에 대해서는 2009. 9. 30. 당초 부서자인 한승수 국무총리 명의 그대로 국회에 제출하였음.

7. 부서 후 공석이 되어 관계 국무위원 부서를 공란으로 하여 관보게재 의뢰한 사례

-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14. 6.)은 당시 조운선 여성가족부장관이 국무회의 의결 후 부서를 하고 나서 사퇴해 공석이 되어 2014. 6. 17.자 관보에는 여성가족부장관 부서는 공란으로 하여 공포하였음.

8. 부총리가 국무총리 직무대행 자격으로 부서하였으나 이후 국무총리가 공포한 사례

-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당시 국무총리 직무대행이었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무회의 의결 후 부서(2022. 5. 17.)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아 재가절차를 완료하였으나, 이후 2022. 5. 21. 한덕수 국무총리가 취임함에 따라 2022. 5. 24.일자 관보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부서자로 기재하여 공포하였음.

9. 행정안전부장관의 공석으로 부서 없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사례

- 2010. 3. 4. 당시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의 사퇴로 행정안전부장관직이 공석이 됨에 따라 2010. 3. 9.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안(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국회 시행 공문에 행정안전부 장관을 공석으로 표시하여 국회에 제출되었음.

공포문서에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부서한 후 공포의뢰 전에 바뀐 경우 관보에는 새로운 국무위원 명의로 공포의뢰하되, 공포문서의 부서는 그대로 둔다.

또한, 공포문서에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부서하고 공포의뢰도 하였으나, 공포일(관보 발간일) 전에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바뀌어 공포일 당시 국무총리·국무위원의 명의로 관보에 게재된 명의를 서로 다르게 된 경우에는 관보를 정정하여 공포일 당시 국무총리·국무위원의 명의로 변경한다.

(3) 국무위원이 아닌 기관의 소관 법령에 대한 부서권자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소관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안건을 제출하고 부서권자가 되며, 그 외의 경우(국무총리가 제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서권자가 된다.

☞ 부서할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불참한 경우에도 대리참석한 자의 대리부서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해당 국무위원 또는 다른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하며(온·나라 국정 관리 시스템상에 대리부서가 불가능하도록 구현되어 있다), 특히 법률안은 반드시 부서를 보완한 후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어 최초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 상정 되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부서하였으나, 이후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부서를 받아 처리하고 있다.

3) 재가 절차

법제정책총괄과에서 작성한 재가문서는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및 국무총리의 부서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게 된다. 다만,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하더라도 기존에 종이문서로 진행하던 절차와 마찬가지로 국무위원의 부서가 끝나면, 국무총리의 의전비서관실을 거쳐 국무총리가 부서하고, 대통령비서실의 총무비서관실 및 의전비서관실을 거쳐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때, 법률의 시행일이 임박하여 하위법령을 마련하게 된 경우와 같이 긴급하게 재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재가안건임을 표시하고 “긴급재가사유”를 기재한 재가문서를 작성한 후 재가 절차를 진행한다.

특이 재가 사례

1.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사례

- 석탄산업법중개정법률안(1988. 11. 9.):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1988. 11. 3. ~ 11. 14.) 중인 11월 4일 제46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석탄산업법중개정법률안은 예산부수법안 이므로 국회의 예산심의일정에 맞추기 위하여 이현재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재가를 하여 같은 해 11월 9일 국회에 제출함.

2.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로 법령안을 공포한 사례

- 법률 및 대통령령 공포안 재가·공포: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어 헌법 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었던 기간(2004. 3. 12. ~ 5. 14.) 중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등 24건의 법률과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등 69건의 대통령령에 대하여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고건)으로 재가하여 공포하였음.

3.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로 법률안에 대하여 재의요구한 사례

-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었던 기간(2004. 3. 12. ~ 5. 14.) 중에 사면법중개정법률안재의요구안, 거창사건등관련자의 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재의요구안 2건의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고건)으로 재가하였음.

4. 전임 대통령 및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임 국무위원 및 국무총리가 부서한 후 신임 대통령이 재가를 하여 공포한 사례

-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등에 대하여 1998년 2월 25일 김영삼 대통령(1998. 2. 28. 임기만료) 주재로 위 법률 공포안을 의결하고, 당시 고건 국무총리(1998. 3. 2.까지 재임)와 심우영 총무처장관(1998. 3. 2.)이 부서한 후 신임대통령인 김대중 대통령이 재가하였음.
- 대통령비서실직제중개정령에 대하여 2003. 2. 24. 김대중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재가하여 공포하였음.

5. 대통령이 국외출장 중 현지에서 재가한 사례

- 2008. 11. 18.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 47건, 철회안 1건, 대통령령안 11건을 국외출장 중인 대통령에게 안보메일로 보내 브라질 상파울루 현지에서 출력, 대통령이 재가하고 외교행낭으로 국내에 송부(11. 20.)되어 총리 및 국무위원이 부서함.

6.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총리 직무대리가 재가를 하여 공포한 사례

- 2025. 4. 29.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안 18건이 의결되었는데 이 중 4건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재가하여 4. 30. 공포하였고, 나머지 14건은 2025. 5. 1. 한덕수 국무총리 및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사임에 따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재가하여 공포하였음.

다. 법률안의 국회 제출

종전에는 국회제출 법률안의 경우 대통령 재가가 완료되면 법제정책총괄과는 재가문서를 발송처리 하고, 법령안 소관부처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그 주 금요일까지 국회 시행문서를 출력하여, 법률안의 인쇄물 5부와 함께 국회 의안과를 직접 방문하여 법률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정부의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과 국회의 e-의안시스템이 연계되어 법률안을 전자

문서로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이문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병행할 필요성이 낮아 종이문서 제출은 생략하는 것으로 국회 의안과와 협의, 2021년 제18회 국무회의(2021. 4. 27.)에서 의결되는 법률안부터 종이문서 없이 전자문서로만 제출하고 있다.

법률안 국회 제출 절차

- ① 국무회의 의사일정 확정 이후, 법률안 이상 유무 및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등 확인 요청(법제정책총괄과 → 해당 부처 법무담당관실)
 - ② 국무회의 의결 및 재가 완료 후, 위 사항 최종 확인 및 법률안 전자문서 발송(법제정책총괄과 → 의안과), 발송 완료 사실 통지(법제정책총괄과 → 해당 부처 법무담당관실)
 - ③ 전자문서 도달 및 요건 구비(접수 가능) 여부 유선전화로 확인(해당 부처 → 의안과)
 - ④ 요건 확인 후 접수 또는 반송 여부 유선전화로 안내(의안과 → 법제정책총괄과 및 해당 부처)
- * 보완 필요 시 반송 후 보완 완료 시 접수

당초 국무회의 상정안건에 포함되어 있던 사항 중 주요토의과제, 관계법령, 입법예고실시 결과 등은 국회에 제출하는 법률안에서는 제외한다[제안이유·주요내용, 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만 표시]. 다만, 참고사항 중 국회심의에 참고가 되는 사항은 다음 예시와 같이 포함하여 제출한다.

국회제출 법률안에 기재되는 참고사항

참고사항

- 가. 이 법률안은 이미 제출된(또는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 나.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조○항 및 제○조○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라. 국회제출법률안의 철회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국회(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국회법」 제90조제3항).

법률안 철회 관련 규정

「국회법」

제90조(의안·동의의 철회)

③정부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정부제출 의안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률안의 철회 절차는 법률안의 국회 제출 절차와 동일하다. 즉 법률안 철회안의 심사의뢰,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상정(철회안: 붙임 제15호서식),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실무사례

법률안 철회안과 대체 법률안 동시 제출⁴¹⁾

철회 대상 법률안이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의제로 되었는지에 따라 법률안 철회의 효력발생 시기를 달리한다. 즉, 해당 법률안이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의제로 된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철회안에 대한 동의를 얻은 때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고, 의제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회 의안과에 접수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철회 대상 법률안의 상태를 조회한 결과, 해당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지 않았거나, 회부되었더라도 소관 상임위의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은 경우 철회안과 대체 법률안을 동시에 제출할 수 있으나, 상임위에서 검토보고가 있었거나, 법률소위에 회부된 경우에는 철회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철회안과 대체 법률안을 동시에 제출할 수 없고, 철회안을 먼저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 철회한 후 대체법률안을 제출한다.

41) 2011년에는 「아동·청소년복지법」으로 제명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2008. 12. 31. 국회에 제출한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정부조직 개편으로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철회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마.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의 처리

1) 선람 및 재의요구 의견 확인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법제정책총괄과에서 접수한다.

법제정책총괄과에서는 법률안이 이송되면 즉시 해당 부처에 이송사실을 통지하여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견 및 명백한 오류 여부를 파악한다.⁴²⁾ 이때 소관 법제(심의)관실에도 이송된 법률안을 통지하여 명백한 오류가 있는지를 함께 파악하도록 한다.

실무사례

이송 법률안 오류 여부 확인 방법

1.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의 본회의 처리의안 메뉴에서 해당 법률안 확인

국회에 제출한 사례가 있다.

- 42)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안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간에는 문구 등에서 경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국회사무처 의안과에서 의안정리 차원에서 띄어쓰기 또는 일부 자구를 수정한 결과이며, 오타자 등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 의안과를 통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정정할 수 있다.

2. 의결결과(원안의결, 수정의결, 대안의결)

① 원안의결

전체		가결		부결			
전체 910건 (2/91 페이지)		10	적용	의안명	오름차순	적용	목록다운로드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제안 이유	소관위원회	의결일자	수정의결	진행상태
2211473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2025-07-15		국토교통위원회	2025-11-13	수정가결	공포
220100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2024-06-26		정무위원회	2025-12-11	원안가결	원안의결
2208490	가족돌봄 등 위기가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5-02-26		보건복지위원회	2025-02-27	원안가결	대안의결(대안을 원안의결)
2214193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2025-11-12		성평등가족위원회	2025-12-02	원안가결	공포
2211248	가족친화적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5-07-03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회	2025-07-03	원안가결	공포
2205380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9인)	2024-11-08		법제사법위원회	2024-12-10	원안가결	공포
220015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27인)	2024-06-05		법제사법위원회	2024-09-26	수정가결	공포
220595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4-11-27		법제사법위원회	2024-11-28	원안가결	공포
220847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5-02-26		법제사법위원회	2025-02-27	원안가결	공포
2202457	간도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윤건영의원 등 45인)	2024-07-31		행정안전위원회	2025-12-02	수정가결	공포

② 수정의결

• 소위 심사정보

소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2025-08-21	2025-09-01	2025-09-01	수정가결

• 법사위 체계지구 심사정보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체계지구검토보고서
2025-09-25	2025-11-06	2025-11-06	수정가결	체계지구검토보고서

• 법사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	2025-11-0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수정가결)	회의록뷰어 회의정보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5-11-13	2025-11-13	제429회 국회(정기회)제12차 본회의	수정가결	회의록뷰어 회의정보

상임위 의결결과(수정의결) 대로 본회의 의결

③ 대안의결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보건복지위원회		2025-02-14	2025-02-14	대안가결	위원회의결안 위원회제출안 (체계자구심사 반영)
<div style="border: 2px solid blue;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color: red; font-weight: bold;">대안은 심사 보고서 없음</div>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5-02-14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의결(대안가결)		회의정보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정보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체계자구검토보고서	
2025-02-14	2025-02-26	2025-02-26	수정가결	체계자구검토보고서	
• 법사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025-02-2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수정가결)		회의정보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결과		회의록	
2025-02-27	2025-02-27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회의정보	
<div style="border: 2px solid blue;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color: red; font-weight: bold;">상임위 의결결과인 대안을 원안결</div>					

심사정보	대안정보	표결정보					
대안 및 대안반영폐기 정보							
다운로드 문서 선택 <input type="checkbox"/> 전체 <input type="checkbox"/> 의안원문 <input type="checkbox"/> 검토보고서 <input type="checkbox"/> 심사보고서 일괄다운로드 >							
• 대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	처리일	처리결과	제안이유	
<input checked="" type="checkbox"/>	2208490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5-02-26	2025-02-27	원안가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안원문	위원회의결안	위원회제출안	체계자구검토보고서	
<div style="border: 2px solid blue;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color: red; font-weight: bold;">대안으로 통합되어 폐기된 법률안들</div>							
• 대안반영폐기 의안(10)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	제안이유	의안원문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input checked="" type="checkbox"/>	2207640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김남희의원 등 11인)	2025-01-20				
<input checked="" type="checkbox"/>	2207308	위기청소년복지 지원법안(서미희의원 등 10인)	2025-01-07				
<input checked="" type="checkbox"/>	2207086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법안(강신우의원 등 11인)	2024-12-30				
<input checked="" type="checkbox"/>	220559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신우의원 등 13인)	2024-11-14				
<input checked="" type="checkbox"/>	2205452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2024-11-11				
<input checked="" type="checkbox"/>	2205442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준생의원 등 11인)	2024-11-11				
<input checked="" type="checkbox"/>	2204618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2인)	2024-10-08				

3. 법제정책총괄과에서 송부한 이송법률안과 심사보고서 또는 대안의 법률안을 비교하여 수정사항 등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 법률공포안의 작성

법률공포안(붙임 제16호서식)은 국회에서 이송되어 온 법률안에 의결주문, 제안이유,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재의요구 여부, 관계법령을 붙여 작성한다. 법률공포안의 제출자는 국무총리(법제처 소관임을 명시)가 된다.

3) 제안설명자료의 작성

법률공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때에는 제안설명을 위해 안건요약서를 만들게 되는데, 제안설명자료(붙임 제17호서식)는 제안이유, 공포대상 법률안 내역(정부제출 법률안의 건수와 원안의결·수정의결·대안의결 건수 및 의원발의 법률안의 건수 등), 중요 법률안 1~2건의 주요내용 그리고 재의요구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하여 처장 결재를 받아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게재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중요 법률안은 2~3건으로 선정하고, 공포대상 법률안의 목록과 주요내용은 별첨으로 첨부한다.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은 15일 이내에 공포되어야 하므로(「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1항), 이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통상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에 직접 상정한다.⁴³⁾

4) 법률공포안 제안설명

국무회의 시 법률공포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일괄하여 법제처장이 한다.

43) 15일의 공포 기한을 맞추기 위해 법제정책총괄과에서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당 안건의 국회 심사보고서를 입수하고, 미리 법률공포안 및 제안설명자료를 작성하여 국무회의 상정을 준비해야 한다.

법률공포안·제안설명자료의 작성과 국무회의 상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사무처 의안과에서 의안정리 및 국회의장 결재를 받은 후 정부에 이송되며, 대략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는 후 7일 이내에 정부로 이송된다.
2.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법제정책총괄과에서는 소관 부처(법무 담당 부서)에 이송 법률안을 통보하여 명백한 오탈자 유무,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 국회 의결내용과의 상이 여부, 하위법령 제때 마련 대상 법률 여부 등을 확인(붙임 제18호서식)하고, 각 법제(심의)관실에는 공포안(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법률안 등)을 배부하여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붙임 제19호서식)하도록 한다.
3. 법률안의 내용 중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소관 부처나 법제(심의)관실에서 통보한 경우, 법제정책 총괄과는 해당 부분을 즉시 국회사무처(의안과)에 통보하여 수정할 것인지를 협의한다.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의안과에서는 즉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 사실을 통지하여 수정 여부에 관하여 협의한다.
4. 협의 결과 수정하기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수정된 법률안을 법제처(법제정책 총괄과)로 통보한다. 법제정책총괄과에서는 이송된 법률안의 오류사항에 대하여 국회와 최종적으로 협의가 끝난 후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바. 공포

1) 관보게재 의뢰

법제정책총괄과에서는 법률공포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가 끝난 때에는 법률공포 대장에 따라 공포번호를 부여하고, 행정안전부 관보시스템에서 법률공포안을 관보게재문 형식으로 작성하여 내부 결재 후 관보 게재를 의뢰해야한다.⁴⁴⁾ 통상 관보발행일로부터 3일전(평일 근무일 기준으로) 18시까지 관보등록신청 및 접수가 완료되어야 한다.

2) 법령의 공포일 및 효력 발생일

법령의 공포일은 그 법령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이며(「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2조),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 일반적으로 법령의 부칙에는 시행일에 관한 규정을 두어 공포한 날,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 장래 특정 일자 등부터 시행

44) 종전에는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실에 공포안을 첨부한 공문을 송부하여 관보 게재를 요청하였으나, 2021. 3. 22.부터는 각 기관에서 관보시스템(www.gwanbo.go.kr)에 접속 후 공포안을 관보게재문으로 직접 작성하여 관보등록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령의 시행일의 기간 계산을 할 때에는 「행정기본법」 제7조45)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않으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령의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행일이 지난 후에 공포된 경우 해당 법령의 시행일은 언제인가가 문제되는데, 이 경우에는 시행일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부칙에 시행일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 날짜보다 하루 전에 공포될 수 있도록 한다.

공포의 지연과 시행기일의 효력에 관한 판례

대법원 1955.6.21. 4288형상95 판결

형사소송법 부칙 제9조에 의하면 동법 시행기일은 서기 1954년 5월 30일로 규정되었으나 동법이 서기 1954년 9월 23일에 공포되었으므로 시행기일에 관한 규정은 법률공포지연으로 인하여 실효되고 헌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법 시행기일은 헌법규정에 의하여 위 공포 후 20일을 경과한 서기 1954년 10월 14일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법령공포의 효력발생 시기에 관한 판례

대구고법 1974. 10. 10. 72노244 형사부판결 : 확정

(구) 국민투표법(1969.9.18. 법률 제2144호)이 게재된 1969.9.18.자 관보 제5352호는 같은날 16:00에 인쇄되어 그날 17:00경 서울시내의 일부 관보보급소에 발송되고, 다음날 17:00경 전국에 배포완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관보를 일반희망자가 열람, 또는 구독하려 하면 할 수 있었던 최초의 시기는 서울시내의 일부 관보보급소에서 빨라도 1969.9.18. 17:00 이후였다 할 것이고, 위 국민투표법은 이 시점 이후에 공포되어 시행됨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3) 법률 공포 통지

법률안을 공포한 후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해야 한다(「국회법」 제98조제2항). 법제 정책총괄과에서는 법률 공포 목록과 공포안을 전자문서로 국회(의안과)에 통지한다.

45) 「행정기본법」 제7조(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법령등(훈령·예규·고시·지침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2.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4) 관보정정

법령이 공포된 후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관보를 정정하여 수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의 관보정정은 국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당초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안의 내용에 변경을 가하지 않는 명백하고도 경미한 사항(오타자의 수정, 경미한 자구 수정, 인용조항의 오류 등)에 한정된다.

관보를 정정하려면 법령의 관보게재를 의뢰한 기관(법제처 또는 법령안 주관기관)이 관보의 발행기관인 행정안전부(법무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관보시스템을 통해 정정관보 등록(붙임 제20호서식)을 신청해야 한다.

관보정정 절차

▶ 법률

1. 오류사항 발견[소관 부처, 법제(심의)관실 등]
2. 국회 관보정정 요청: 국회 사무처 의안과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3. 관보정정: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 법제정책국장 ⇒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실

▶ 대통령령

1. 오류사항 발견[소관 부처, 법제(심의)관실 등]
2. 관보정정 요청(법제처 내): 법제(심의)관 ⇒ 법제국장 ⇒ 법제정책총괄과
3. 관보정정 요청(외부시행): 법제정책총괄과 ⇒ 법제정책국장 ⇒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실

▶ 총리령·부령

1. 오류사항 발견[소관 부처, 법제(심의)관실 등]
2. 관보정정 요청사항 확인: 소관 부처 ⇒ 소관 법제(심의)관실 확인 ⇒ 법제국장
3. 관보정정 요청: 소관 부처 ⇒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실

사. 법률안의 재의요구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송해 온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2항 및 제3항).

1) 법률안 재의요구의 처리 절차

가) 재의요구 여부 파악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어 오면 법제정책총괄과에서는 접수 즉시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해당 부처에 이송사실을 통지하고,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을 파악한다.

나) 재의요구안의 심사요청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있는 부처는 재의요구 이유를 명시한 재의요구안을 작성하여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다) 법제처 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

재의요구안의 심사를 마친 담당 법제(심의)관은 재의요구안 심사보고서(붙임 제21호서식)를 작성하여 처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심사결과를 부처에 통보한다.

라) 재의요구안의 국무회의 상정

법제처로부터 재의요구안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부처에서는 심사결과를 반영한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이 경우 안건의 제안자는 소관 부처의 장인 국무위원이 되며(법률공포안은 국무총리가 제안자가 되며, 실제 제안설명은 법제처장이 함), 정부이송 후 15일 이내에 국회에 재의요구를 해야 하므로 법률공포안과 마찬가지로 차관회의 상정은 생략한다.

재의요구안의 국무회의 진행방식

- 재의요구안의 국무회의 진행방식은 다음과 같다.
 - ① 정부로 이송된 법률공포안을 모두 상정한다.
 - ② 먼저 법제처장이 각 법률공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 소관부처의 재의요구 의견이 없는 법률공포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을 요청하고,
 - 소관부처의 재의요구 의견이 있는 법률공포안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에서 재의요구 의견을 제출하였는바, 논의를 한 후 공포 또는 재의요구 여부를 심의·의결하여 달라”는 취지의 설명을 한다.
 - ③ 이어서, 소관부처의 장이 재의요구안의 취지를 설명한 후에 토의를 진행한다.
 - 토의 결과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경우에는 법률공포안은 부결된다.
 - 반대로 재의요구안이 부결되면 법률공포안이 의결된다.

마) 재의요구안의 국회제출

법제정책총괄과에서는 국무회의의 의결이 있으면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해당 재의요구안을 제안했던 국무위원)의 부서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후 전자문서로 재의요구공문(붙임 제22호서식) 및 재의요구안을 국회에 발송하고 발송 완료 사실을 소관부처에 통지한다. 이후 소관부처에서는 의안과에 유선으로 재의요구안에 대한 최종 접수를 요청해야 한다.

정부의 법률안 재의요구 처리 절차

순서	관 계 기 관	업 무 내 용
1	국회(의안과)	○ 법률안 정부이송
2	법제처	○ 법률안 접수·선람 ○ 접수 당일 법률안 소관 부처에 통보
3	법률안 소관 부처	○ 재의요구안 입안 및 심사요청
4	법제처[법제(심의)관]	○ 재의요구안 심사, 처장 결재
5	법률안 소관 부처	○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상정의뢰
6	행정안전부(의정담당관)	○ 국무회의 상정
7	법률안 소관 부처	○ 재의요구 취지 설명
8	법제처(법제정책총괄과)	○ 재의요구안 재가 상신
9	국무총리, 관계 국무위원	○ 재의요구안 부서
10	대통령	○ 재의요구안 재가
11	법률안 소관 부처	○ 재의요구안 국회제출 - 이송일부(초일 제외) 15일 이내 제출

바) 재의요구안의 국회접수

정부의 재의요구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사무처(의안과)에서는 지체 없이 소관 위원회·교섭단체 및 의사과 등에 법률안이 환부되었음을 알리고, 재의요구안을 의원 등에게 배부한다.

사) 본회의 심의

재의요구안은 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서 『-----법률안 재의요구안』으로 의사일정을 정하여 상정·처리한다. 본회의에 재의요구안이 상정되면 정부로부터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아) 본회의 의결

재의요구된 법률안을 재의에 부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4항).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은 부결되고, 의결에 부치지 않고 임기만료된 경우에는 폐기된다.

자) 재의결과 통지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요구된 법률안이 의결되어 그 법률안이 법률로 확정되면 국회는 그 법률(재의결되어 법률로 확정되었으므로 법률안이 아님)을 정부로 이송한다. 부결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부에 통지한다.

차) 공포

대통령은 재의요구된 법률안이 의결되어 확정된 법률이 정부에 이송되면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재의결된 법률의 국무회의 상정 여부

- 국회에서 재의(再議) 결과 가결(可決)되어 확정된 법률이 정부로 이송된 경우 이에 대한 공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법률안이 법률로 확정되면 공포절차만 남게 되므로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국무회의 상정 불요설)와 법률로 확정되었더라도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와 대통령재가를 통한 공포라는 절차가 있어야 하며, 확정된 법률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공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헌법 제53조제6항 :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공포)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견해(국무회의 상정 필요설)가 대립되고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필요설에 입각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고 있다.
-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에 대한 재의안이 국회에서 재의결(2003. 12. 4.)되어 정부로 이송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국무회의(2003. 12. 6.)를 거쳐 공포한 사례가 있다.
- 「방송법」에 대한 재의안이 국회에서 재의결(2025. 4. 17.)되어 정부로 이송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국무회의(2025. 4. 22.)를 거쳐 공포한 사례가 있다.

2) 재의요구 사례

정부수립 이후 2025. 12. 현재까지 총 108건의 법률안 재의요구⁴⁶⁾가 있었다. 이 중에 「임시토지수득세법」 등 32건은 국회에서 재의결되어 법률로서 확정되었고, 「정부조직법」 등 73건은 폐기되었으며, 「탄핵심판법」 등 2건은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철회하였다.

법률안 재의요구 현황

구 분	거부권행사 법률안 수	처 리 결 과			철회
		법률로 확정	폐기	계류	
계	97	31	58	6	2
제헌 국회	14	12	2	0	0
제2대 국회	25	18	7	0	0
제3대 국회	3	0	2	0	1
제4대 국회	3	0	3	0	0
제6대 국회	1	0	0	0	1
제7대 국회	3	0	3	0	0
제9대 국회	1	0	1	0	0
제13대 국회	7	0	7	0	0
제16대 국회	4	1	3	0	0
제17대 국회	2	0	2	0	0
제18대 국회	0	0	0	0	0
제19대 국회	3	0	3	0	0
제20대 국회	0	0	0	0	0
제21대 국회	14	0	14	0	0
제22대 국회	28	1	26	1	0

46) 특이 사례로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었으나, 보류된 후 다음 회차 국무회의에서 부결되었다.

제13대 국회 이후 재의요구한 사례(58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3대 국회 이후 재의요구 사례

연번	법률안 제명(재의요구일)	재의요구 사유
1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안(1988. 7. 15.)	- 헌법 위반(권력분립) - 법리상 곤란(헌법상 근거 불분명)
2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1988. 7. 15.)	- 헌법 위반(권력분립) - 국가안위 위협 - 법리상 곤란(법률 간 상충, 법체계 부조화)
3	1980년해직공무원의복직및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안(1988. 12. 30.)	- 헌법 위반(권력분립) - 사실상 집행 곤란 - 법리상 곤란(인사관계 법령과 상치, 사적계약에 의한 고용관계를 법률로 강제)
4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1989. 3. 25.)	- 정부정책기조와 상충
5	노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1989. 3. 25.)	- 사실상 집행 곤란 - 법리상 곤란(법률 간 상충)
6	노동쟁의조정법중개정법률안(1989. 3. 25.)	- 정부정책기조와 상충
7	국민의료보험법안(1989. 3. 25.)	- 헌법 위반(재산권 보장)
8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과북한핵개발자금전용의혹사건및관련비자금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2003. 7. 23.)	- 대통령권한의 과도한 제한 - 정부의 정책기조와 상충
9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 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2003. 11. 25.)	- 대통령권한의 과도한 제한 - 부당한 정치적 공세
10	사면법중개정법률안(2004. 3. 25.)	- 대통령권한의 과도한 제한
11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2004. 3. 25.)	- 과도한 재정부담
12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2007. 8. 3.)	- 과도한 재정부담 - 법리상 곤란(법체계 부조화)
13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안(2008. 1. 28.)	- 과도한 재정부담 - 법리상 곤란(소급입법)
1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2013. 1. 23.)	- 법리상 곤란(법체계 부조화) - 과도한 재정부담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15. 6. 25.)	- 헌법 위반(행정입법권 침해) - 집행 곤란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16. 5. 27.)	- 헌법 위반(권력분립) - 집행 곤란
1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3. 4. 4.)	- 과도한 재정부담 - 형평성 논란 등

연번	법률안 제명(재의요구일)	재의요구 사유
18	간호법안(2023. 5. 16.)	-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 초래 -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의 과도한 제한 등
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 12. 1.)	- 산업현장의 혼란 초래 - 죄형법정주의 위반
2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23. 12. 1.)	-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훼손 - 이사회 기능 형해화
2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3. 12. 1.)	-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훼손 - 이사회 기능 형해화
22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3. 12. 1.)	-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훼손 - 포괄위임
23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 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 1. 5.)	- 헌법 위반(삼권분립) - 선거의 공정성 훼손
24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024. 1. 5.)	- 헌법 위반(삼권분립) - 특검의 공정성·정치적 중립성 담보 어려움
25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2024. 1. 30.)	- 영장주의 원칙 훼손 - 사법부·행정부 권한 침해
26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024. 5. 21.)	- 헌법 위반(삼권분립) - 특검의 공정성·정치적 중립성 담보 어려움
2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4. 5. 29.)	- 헌법상 평등원칙 위배 -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 침해 우려
28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2024. 5. 29.)	- 타 축종 사육농가와 차별적 형평성 저해
29	농어업회의소법안(2024. 5. 29.)	- 기존 농어업인단체와 신설 회의소간 갈등 발생 우려
30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2024. 5. 29.)	- 민주유공자 결정 기준 부재 - 집행 곤란
31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024. 7. 9.)	- 헌법 위반(삼권분립) - 특검의 공정성·정치적 중립성 담보 어려움
3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 정법률안(2024. 8. 13.)	- 헌법 위반(삼권분립) - 방송통신 현안 처리 지연 우려
3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24. 8. 13.)	-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훼손
34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4. 8. 13.)	-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훼손
3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4. 8. 13.)	-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훼손
36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2024. 8. 19.)	- 정부의 예산편성권 침해 - 과도한 재정부담
3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9.)	- 죄형법정주의 위반 - 근로3권의 보호범위 일탈
38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024. 10. 12.)	- 헌법 위반(삼권분립) - 특검의 공정성·정치적 중립성 담보 어려움
39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 10. 12.)	- 헌법 위반(삼권분립) - 특검의 공정성·정치적 중립성 담보 어려움

연번	법률안 제명(재의요구일)	재의요구 사유
4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2024. 10. 12.)	- 지방자치권 침해 소지 - 정부의 예산편성권 침해
4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 11. 26.)	- 헌법 위반(삼권분립) - 특검의 공정성·정치적 중립성 담보 어려움
4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4. 12. 19.)	- 국가재정 운용 차질 및 공공 복리 저해 우려 - 헌법 및 국회법 취지에 부적합
4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9.)	-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산권 및 기업활동의 자유 침해 -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 위배
4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9.)	- 특정 품목 공급과잉 - 품목 간 수급 불균형 및 가격불안 초래 - 과도한 재정 부담 - 생산자단체 간 불필요한 갈등 발생 우려 - 사회적공감대 부족
4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2024. 12. 19.)	- 재해지원 행정상 혼란 야기 -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유인 감소 - 사회적공감대 부족
46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24. 12. 19.)	- 농어업재해보험의 지속가능한 운영 저해 - 보험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저해 - 사회적공감대 부족
4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4. 12. 19.)	- 쌀 공급과잉 - 과도한 재정 부담 - 식량안보 강화에 부정적 영향 - 사회적공감대 부족
48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 12. 31.)	- 헌법 위반(삼권분립) - 특검의 공정성·정치적 중립성 담보 어려움
49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 12. 31.)	- 헌법 위반(삼권분립) - 특검의 공정성·정치적 중립성 담보 어려움
5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25. 1. 14.)	- 국가재정에 부담 초래 - 정부의 예산편성권 무력화 소지
5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25. 1. 22.)	- 수신료 납부의무 없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소지 - 행정부 자율성 훼손 소지
5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5. 1. 22.)	-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우려
53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2025. 1. 22.)	-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소지 - 진정소급입법 해당 소지
54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025. 1. 31.)	- 헌법 위반(삼권분립) - 특검의 공정성·정치적 중립성 담보 어려움
55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2025. 3. 14.)	- 헌법 위반(삼권분립) - 특검의 공정성·정치적 중립성 담보 어려움

연번	법률안 제명(재의요구일)	재의요구 사유
56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2025. 3. 18.)	- 헌법 위반(삼권분립) - 방송통신 현안 처리 지연 우려
5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2025. 4. 1.)	- 명확성 원칙 위배 소지
5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2025. 4. 29.)	- 대통령의 임명권 형해화 - 헌법의 헌법재판관 임기규정 위반 소지

02 그 밖의 법령안 등의 입법절차

가. 총리령안

총리령안은 법제국장의 결재로써 법제처 심사가 끝난다. 법제(심의)관실은 국장의 결재가 완료된 총리령안에 대하여 정부입법시스템으로 총리령안 심사확인증(붙임 제23호서식)을 생성한 후, 심사결과 공문에 심사확인증을 첨부하여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온-나라시스템 전자문서로 발송한다. 법령안 주관기관은 통보받은 총리령안에 대하여 심사확인증을 첨부하여 국무총리의 결재를 받은 후 법제정책총괄과에서 공포번호를 부여받아 행정안전부에 공포(관보게재)를 의뢰한다. 이 때,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심사안의 내용(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포함) 그대로 관보에 게재해야 하며, 내용의 수정이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나. 부령안

부령안도 각 법제국장의 결재로써 법제처 심사가 끝나며, 법제(심의)관실은 국장의 결재가 완료된 부령안에 대하여 정부입법시스템으로 부령안 심사확인증(붙임 제24호서식)을 생성한 후, 심사결과 공문에 심사확인증을 첨부하여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온-나라 시스템 전자문서로 발송한다.

법령안 주관기관은 통보받은 부령안에 심사확인증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에 관보게재를 의뢰한다. 이 때,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심사안의 내용(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포함) 그대로 관보에 게재해야 하며, 내용의 수정이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공동부령(특정 부령이 둘 이상 부처의 소관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의 경우에는 법제처에 심사의뢰할 때 관련 부처가 모두 심사의뢰를 하고, 심사는 실제 입법을 추진하는 부처를 담당하는 법제(심의)관실에서 심사를 한다. 심사가 완료되면 해당 부처 모두에 심사안과 부령안 심사확인증을 보내어 공동으로 행정안전부에 관보게재를 의뢰하도록 한다. 공동부령의 형식과 개정방식에 대해서는 「법령 입안·심사 기준(2024년판)」(p.784)을 참조한다.

다. 조약안

법제처의 심사(처장 결재)를 마친 조약안에 대해서는 그 검토결과를 외교부에 통보한다. 조약안의 국무회의 상정, 국회제출(국회동의를 요하는 경우) 등 조약의 체결, 비준 절차와 공포 절차는 외교부에서 진행한다.

2026년도 법제업무편람

법제처 심사 후의 입법절차

